

『융합교육연구』 발간 규정

제정 2015. 7. 23.(규정 제 1호)

개정 2020. 1. 30.(규정 제 1호)

개정 2021. 1. 30.(규정 제 1호)

개정 2024. 1. 30.(규정 제 1호)

개정 2024. 5. 30.(규정 제 1호)

개정 2025. 4. 30.(규정 제 1호)

1. 발간 횟수와 시기

연 3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2. 편집위원회 규정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융합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10년 이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에 10편(공저자가 있는 경우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편집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편집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편집위원은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으로 융합교육연구소장이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 또는 연구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 학술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에 5편(공저자가 있는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 또는 저서를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바.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편집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편집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아.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융합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편집간사를 겸한다.
- 자.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융합교육연구』의 발행횟수 및 발행일, 원고접수, 논문 심사, 편집 등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심의한다.
- 차. 편집위원회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1) 편집위원회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6개월에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정기회의에 불참한 편집위원은 위임 또는 온라인(이메일 및 유선)으로 의견(동의, 부동의)을 표시할 수 있다.
 - 3) 회의의 성원은 편집위원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위임포함)으로 하고, 그 의결은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 의결권을 위임한다.
 -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원고 접수 및 논문 심사

- 가. 원고는 정시 접수하며, 각 호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각 호의 발행일 40일 전까지 접수된 원고를 심사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접수된 원고는 해당 편집위원이 학술지와 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연구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위촉한다.
- 다. 원고마다 심사위원을 3명씩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한다.
- 1) 각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기준을 참고하여 투고된 논문을 세부적·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하여 그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
 - 내용의 완결성
 - 논문작성의 성실성
 -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논문주제의 창의성

-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논문초록의 적합성
-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2) 1차 심사 결과 판정 및 조치: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의 1차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하고, 편집위원장은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1)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 (2) 수정후게재: 논문에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수정된 논문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수정논문과 수정답변서를 직접 검토하여 수정요구사항의 이행 여부 및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에게 수정논문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거나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추가적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거나 수정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를 불허할 수 있다.
- (3) 수정후재심: 논문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후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 (4) 게재불가: 논문의 질적 수준, 내용, 또는 윤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다.
- 3) 수정 논문 제출: ‘수정후게재’ 또는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서에 명시된 기일 내에 수정된 논문과 함께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수정내용 대비표 등)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4) 2차 심사 (수정후재심사): 1차 심사결과 ‘수정후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의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심사위원들이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검토하여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5) 최종 게재 결정: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 결과(‘게재가’ 판정 시), ‘수정후게재’ 판정 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검토 결과, 또는 ‘수정후재심’ 판정 논문에 대한 2차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6) 심사결과 통보: 최초 심사결과는 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정 논문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는 접수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 결정을 투고자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다.
- 7) 『융합교육연구』에 투고하였다가 종합판정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있다.
- 라. 최종심사결과 이의제기
- 1) 논문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위의 심사절차를 따라 단심으로 심사를 하며, 그 판정결과에 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단,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논문심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 마. [별첨] 저작권 양도 동의서
-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교원대학교 융합교육연구소”에 있다. 게재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본 연구소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논문에는 Creative Commons License(CCL)을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 표시를 한다. 본 학술지의 논문에 대해 저작자를 밝히면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바. 논문 게재 시에는 논문 파일과 저작권재산권 양도확인서와 함께 연구윤리 협약서, KCI 문헌유사도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 시 KCI 문헌유사도 검사 서비스 결과 일치율 15% 이상이면 반려한다.

사.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와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